

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8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에서는 재난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분야에 특화된 서울기술연구원을 '18년 신설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
나. 이에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전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1) 대상기관 :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

2) 관련법령 및 조례

- 관련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관련조례 :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출연의 필요성

1)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 분야 연구 기능수행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필요

2) 서울시 각 부서의 기술분야 연구과제 선정 등 서울시 기술분야 연구총괄 추진

- 3) 노후 도시기반시설에 기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비해 시민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
- 4) 연구원의 독립성 강화, 장기적 발전 및 기술분야 연구영역 확장 등 기술분야 연구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

다. 주요 사업

- 1) 재난 예방 및 대응(지진, 화재, 폭염·한파, 폭설, 산사태 등) 조사·연구
- 2) 도시개발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(도로, 지하철, 주택건축, 교량 등) 조사·연구
- 3) 물 순환 및 하천관리(풍수해, 생태, 하수도 등) 조사·연구
- 4)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 및 평가
- 5)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안전총괄과 사회안전팀 황동연 (☎ 2133-8146)